

## 결 정

2018 - 4005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 
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중 순

## 주 문

아시아투데이(asiatoday.co.kr) 2017년 11월 28일자(캡처시각) 「“3천 사채” 한  
강 자살시도女 3개월 만에 ‘인생 역전’」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치한다.

## 이 유



<11. 28. 12:39:42 캡처>

<<http://www.asiatoday.co.kr/view.php?key=20171128010014859>>

아시아투데이는 광고 제목에 ‘자살 시도’라는 표현을 썼다. ‘자살’ 또는 ‘자살 시도’는 그 자체로 자살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기에 이를 언론매체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사회적 합의이다. 이러한 합의 정신은 언론매체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광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.

이는 “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

안 된다”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1월 10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원장	김 용 담	김용담
위원	정 송 호	정송호
	장 명 국	장명국
	이 동 현	이동현
	장 인 철	장인철
	강 희	강희
	김 영 모	김영모
	박 현 갑	박현갑
	박 미 경	박미경